##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22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전주혜·양금희·서범수

윤한홍 • 김석기 • 조수진

신원식 · 김영식 · 서일준

김정재 • 윤두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함으 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처분 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등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 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 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3조제 3항).

#### 법률 제 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폭력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저지른 경우
-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제9조의2에 따른 상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5.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40조제1항제6호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를 "법무부장관이"로 한다.

법률 제17499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3항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제9조의2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기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기	-정폭 어느 = 가  서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여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한니 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된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기차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기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 개	-정폭 어느 = 가  서는		
(조) 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격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연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가입니다.         (조) 전기 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된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입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 전기를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가	어느 = 가  서는		
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여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나 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기차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기	어느 = 가  서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아니 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2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	<u>: 가</u>  서는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아니 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기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기	<u> 서는</u>		
아니 된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기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기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기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기	폭력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기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기	폭력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	1. 제2조제3호가목의 가정폭력		
전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 <i>/</i>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저지른 경우		
	2.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의2에 따른 상담조점	3. 제9조의2에 따른 상담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님	4.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우		
5. 제40조에 따른 보호처 <b>.</b>	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있는 경우	<u>.</u>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예)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1. ~ 5. (생략)
  -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 8. (생략)
  - ② ~ ⑥ (생 략)
- 법률 제17499호 가정폭력범죄의 법률 제17499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_
다만, 다	<u> </u>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히	}
<u>다.</u>	
1.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	]
정되는 경우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
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1
저지른 경우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_
	_
1. ~ 5. (현행과 같음)	
6. 법무부장관이	_

- 7. · 8.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② (생 략)
-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 ③ -----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생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	행죄)
-----------	----	----	-----

- ① ② (현행과 같음)

- 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 (현행과 같음)